

청강모바일아카데미 시설물 사용규정

제정 2010. 1. 1.

개정 2012. 3. 1.

제1조(목적) 청강모바일아카데미(이하 “센터”)는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용도로 건립된 건물로서 이 규정은 시설물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센터 시설물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 및 협력사 위탁교육 용도로 사용한다.

제3조(범위) 센터 시설물 중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강의실 및 실습실
- ② 숙소
- ③ 세미나실

제4조(주관부서)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및 협력사 위탁교육 목적으로 사용 시 센터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신청 및 허가) 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(별지 서식 1호)에 의해 사용단체, 목적, 사용기간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허가조건) 센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준수) 센터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용 승인 목적이외의 사용금지
- ②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
- ③ 안전 및 질서유지
- ④ 기타 우리대학 및 센터에서 지시한 사항

제8조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.

- ① 센터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
- ② 허가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
- ③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④ 시설물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,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⑤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제9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변상)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) ① 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참가생의 교육비는 과정별 특성에 맞추어 센터에서 결정한다.

② 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외의 시설사용료는 센터 시설사용료(별지 서식 2호)에 의하여 책정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 제2호)

시설 사용료

규정 시행일 : 2012년 3월 1일

(단위: 원 / VAT 별도)

기준	장소	시간	요금(원)	비고
교육과정 협약사 시설사용료	강의실	1일	200,000	
	숙소	1일/1인	20,000	
	세미나실	1일	100,000	
교육과정 비협약사 시설사용료	강의실	1일	300,000	
	숙소	1일/1인	25,000	
	세미나실	1일	150,000	

※ 사용기준

1. 숙소 1일 숙박 기준(당일 15:00 - 익일 10:00)
2. 초과비용 : 해당 시설물의 1일 사용 기준금액을 8시간으로 나누어 초과한 시간만큼 초과 징수함
3.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사용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.